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자격요건 신설〉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24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 2 |
| 2. 검토의견 .....          | 4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해식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16.
3. 회부연월일 : 2025. 9. 1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등을 교육·훈련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둬.

그런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사무를 총괄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정무직으로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그 자격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가 없음. 이로 인하여 국가공무원의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 원장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여, 국가공무원의 공직가치 확립과 전문성 및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 Ⅲ. 검토의견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대한 자격요건을 신설하고하  
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①<br>② (생략) |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①<br>② (현행과 같음)                                    |
| <신설>                        | ③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                             | 1. 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 2.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행정 또는 교육 및 인재개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 3. 행정 또는 교육 및 인재개발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③ · ④ (생략)                  |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 검토의견

현행법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국가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① 5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② 교과·교재 및 교육훈련기법 등 연구·개발, ③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sup>1)</sup>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하 “국가인재개발원장”이라 함)은 현행법 제3조에 따라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음.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조직 현황) 3부 1센터 7과 / 정원152명
- (주요 기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국가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①5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②교과·교재 및 교육훈련기법 등 연구·개발, ③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사무 관장
- (교육현황) 5급 신임관리자과정 등 연간 71개 과정, 7,535명 교육  
※ 2025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계획 집합교육 기준
- (인재원장) 차관급 정무직공무원

자료: 인사혁신처

- 1)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①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한다.
- 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다. 그 밖에 외국공무원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평가  
가. 공직가치·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나.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다.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기반 마련
  3. 국내외 공공·민간 교육훈련·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역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

| 대수  | 이름    | 재임 기간      |              | 출신 구분                           |
|-----|-------|------------|--------------|---------------------------------|
| 1대  | 이 세 규 | 1961-10-06 | ~ 1964-01-17 | 2년4월<br>군인                      |
| 2대  | 정 세 웅 | 1964-01-18 | ~ 1972-09-25 | 8년8월<br>군인                      |
| 3대  | 서 재 원 | 1972-10-05 | ~ 1974-04-29 | 1년7월<br>공무원                     |
| 4대  | 동 홍 옥 | 1974-04-30 | ~ 1975-08-17 | 1년4월<br>공무원                     |
| 5대  | 김 용 래 | 1975-08-18 | ~ 1980-06-08 | 4년10월<br>공무원                    |
| 6대  | 김 형 준 | 1980-06-09 | ~ 1982-12-21 | 2년6월<br>공무원                     |
| 7대  | 손 관 호 | 1982-12-27 | ~ 1987-07-17 | 4년7월<br>공무원                     |
| 8대  | 손 종 석 | 1987-08-10 | ~ 1988-12-12 | 1년4월<br>공무원                     |
| 9대  | 정 문 화 | 1988-12-13 | ~ 1990-09-26 | 1년10월<br>공무원                    |
| 10대 | 황 병 인 | 1990-09-27 | ~ 1993-03-03 | 2년5월<br>공무원                     |
| 11대 | 박 해 준 | 1993-03-04 | ~ 1993-12-27 | 10월<br>공무원                      |
| 12대 | 윤 한 도 | 1993-12-28 | ~ 1994-12-25 | 1년<br>공무원                       |
| 13대 | 윤 웅 규 | 1994-12-26 | ~ 1995-12-25 | 1년<br>공무원                       |
| 14대 | 강 빈   | 1996-01-04 | ~ 1998-03-08 | 2년2월<br>공무원                     |
| 15대 | 박 용 환 | 1998-03-09 | ~ 2000-01-26 | 1년11월<br>공무원                    |
| 16대 | 나 승 포 | 2000-01-27 | ~ 2001-03-26 | 1년2월<br>공무원                     |
| 17대 | 김 병 호 | 2001-04-02 | ~ 2002-07-18 | 1년4월<br>공무원                     |
| 18대 | 김 주 현 | 2002-07-19 | ~ 2003-03-02 | 7월<br>공무원                       |
| 19대 | 정 채 용 | 2003-03-03 | ~ 2003-08-11 | 5월<br>공무원                       |
| 20대 | 박 명 재 | 2003-08-12 | ~ 2006-03-31 | 2년7월<br>공무원                     |
| 21대 | 이 성 열 | 2006-04-07 | ~ 2007-08-23 | 1년5월<br>공무원                     |
| 22대 | 이 승 우 | 2007-08-31 | ~ 2008-01-07 | 5월<br>공무원                       |
| 23대 | 정 장 식 | 2008-03-08 | ~ 2010-02-07 | 1년11월<br>공무원                    |
| 24대 | 윤 은 기 | 2010-05-13 | ~ 2013-04-18 | 2년11월<br>민간                     |
| 25대 | 유 영 제 | 2013-04-18 | ~ 2015-02-26 | 1년11월<br>교수                     |
| 26대 | 옥 동 석 | 2015-05-12 | ~ 2017-07-18 | 2년2월<br>교수                      |
| 27대 | 오 동 호 | 2017-07-18 | ~ 2018-08-31 | 1년1월<br>공무원<br>■ 前 소청심사위 상임위원   |
| 28대 | 양 향 자 | 2018-08-31 | ~ 2019-08-01 | 11월<br>정치인<br>■ 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 29대 | 박 춘 란 | 2019-10-02 | ~ 2021-06-09 | 1년8월<br>공무원<br>■ 前 교육부 차관       |
| 30대 | 최 창 원 | 2021-06-14 | ~ 2022-06-21 | 1년<br>공무원<br>■ 前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 31대 | 신 영 숙 | 2022-06-23 | ~ 2023-07-02 | 1년<br>공무원<br>■ 前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 32대 | 김 채 환 | 2023-07-03 | ~ 2024-12-26 | 1년6월<br>민간<br>■ 前 서울사이버대학교 전임교수 |
| 33대 | 임 채 원 | 2025-09-10 | ~            | 특임교수<br>■ 前 경희대 미래문명원 특임교수      |

자료: 인사혁신처

그런데 국가인재개발원장은 정부 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총괄하고 미래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국가 공무원의 핵심 역량 개발과 가치관 확립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자격 요건이나 임명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국가공무원의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국가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가인재개발원장의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공무원의 공직가치 확립과 전문성 및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봄.

다만, 국가인재개발원장이 정무직<sup>2)</sup>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과 자격요건을 지나치게 구체화할 경우 인재 발굴 및 임명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유사 입법례와 같이 포괄적인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

2)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유사 입법례》

「국립외교원법」 제4조(원장의 임명 등) ① 국립외교원에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원장은 국립외교원의 직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하되, 외교 분야에 대한 경륜과 학식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 ⑥ (생략)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개발원장의 자격요건 신설을 통해 공무원 전문성 및 역량 제고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자격요건이 구체적일 경우 폭넓은 인재 발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타 입법례와 같이 ‘행정 및 인재개발 분야에 대한 경륜과 학식이 인정되는 사람’ 등 보다 포괄적인 방식으로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